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가단1261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1. 26

판결 선고 2021. 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30.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22, 222, 222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 222, 22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 6. 9. 'C은 원고에게 20,458,890원 및 그 중 6,779,065원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20가소29521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은 아버지 그이 사망하자, 2012. 11. 30. 어머니인 피고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모두 소유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는 위 계약을 원인으로 2019.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4. 1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조아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계약은 2012. 11. 30.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도과된 후인 2020. 7. 22. 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강진우

별지